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5.)

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미영]

목 차

1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1
2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3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9
5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38
6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44

거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2조·별표)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소 부지, 충전장소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등
 - 2)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사업소 부지, 용기 보관실 구조·면적 등
- 나. 경상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지적사항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9. 16. ~ 10. 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어 있고 경상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액화 석유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3호, 2020. 2. 4, 일부개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타법개정]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제4항,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
-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5.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②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4.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충전설비 중 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2호가목1)다)의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저장설비·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W = 0.85dV$

W: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kg/L)

V: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가스라이터용 충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라)에서 같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 (2) 충전설비 중 충전기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충전기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1)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 (1) 충전시설 변경 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

- 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 (2)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 (3)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 (4)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 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 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 m
40톤 초과	30 m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 아)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 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를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 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일 안에서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마) 처리능력은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1)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 (2)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마)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 사)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는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아)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인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 자)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세이프티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차) 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충전 경보 또는 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과피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1)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 (2) 저온저장탱크[이중각(二重殼)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그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 (3)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 4) 가스설비기준
-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일 것
 - 나)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다) 충전시설에는 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잔량측정기·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5) 배관설비기준
-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이 있는 재료로 되어 있을 것
 -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 라) 배관은 신축(伸縮) 등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바) 배관의 안전을 위하여 배관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하고 표시할 것
- 6) 사고예방설비기준
-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충전기 주위, 저장설비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를 옮겨 넣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 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 성능을 갖춘 것일 것
 - 마)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바)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바깥 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비와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아) 용기 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7) 피해저감설비기준
-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체 상태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나)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충전장소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 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라)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
- 8) 부대설비기준
- 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사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 나) 충전시설에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과 충전용기 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가스설비 설치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재료나 난연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며,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다) 충전된 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조식 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 제거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다만 용기 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라) 소형용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접합 또는 납땜임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추는 것
 - 마) 소형용기 중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시설에는 캔밸브[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말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 교체에 의하여 캔밸브 교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캔벨브를 교체하는 경우 그 용기 안의 잔가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잔가스는 다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 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를 말한다)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 (1)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4)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각 벌크로리별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3)의 단서에 따라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는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각각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을 설정한다.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1)가) 및 아)에 대하여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아)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다) 나)에 따라 1)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거리는 해당 충전소의 충전소 허가신청일과 보호시설에 대한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라)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 (2)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 집광판,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 다) 저장설비실 안으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에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8 m 이내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을 것
- 바)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 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 두지 않을 것
-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 아)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봉(液封) 방지를 위하여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그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 차) 용기 보관장소에 충전용기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할 것
 - (1) 용기 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 (2) 용기 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않을 것
 -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4)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이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
 - (5) 용기 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燈火)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 (6) 용기 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해 놓을 것
- 카)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타)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파)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연결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 하)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중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1)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 상태를 포함한다)을 표시할 것
 - (2)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 (3) 밸브등을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4)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등 확보할 것
- 거)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하려면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 너)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 중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할 것
- 러)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충전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충전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2) 제조 및 충전기준

- 가)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 라) 액화석유가스가 공기 중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혼합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공업용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섞어 용기에 충전할 것
-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정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3)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4)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에 접속하지 않을 것

바) 충전설비에서 가스충전작업을 하려면 외부에서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사)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할 것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

V: 용기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아)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으면 열습포나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자) 소형용기 중 접합 또는 납땀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에어졸충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과 성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접합 또는 납땀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0.52MPa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은 10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mol% 이상

(2)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1.53MPa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 90mol% 이상

차)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후 과충전된 것은 가스회수장치로 보내 초과량을 회수하고 부족한 양은 재충전할 것

카)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1)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 다음의 안전점검을 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할 것

(가) 외관검사

① 제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일 것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의 상태가 4급에 해당하는 찌힌 흠(긁힌 흠), 부식, 우그러짐 및 화염(전기불꽃)에 의한 흠이 없을 것

(나) 캔밸브와 용기밸브

① 캔밸브와 용기밸브는 부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착연월이 새겨져 있을 것

②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 주름, 부식 등이 없을 것

(다) 표시사항

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된 것은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접용기에 부탄가스 또는 프로판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그 용접용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충전하여야 한다.

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하거나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3)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하) 벌크로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2)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할 것

(3)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감시하여 과충전 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세이프티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5)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할 것. 다만, 저장탱크 설치 장소까지 벌크로리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벌크로리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전호스 커플링 연결부 등을 감시하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작동 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중 외관이 불량한 용기에 대해서는 가목8)다)에 따른 시설로 누출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용기에 대해서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출시험을 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연속공정에 의하여 55±2℃의 온수조에 60초 이상 통과시키는 누출검사를 모든 용기에 대하여 실시하고, 불합격된 용기는 파기할 것

라)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맨 끝 부분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정 주기는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로 한다.

마)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하여 누출량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작동이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바) 정전기 제거 설비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1) 지상에서의 접지저항치

(2)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 상태

(3) 지상에서의 절선 부분이나 그 밖의 손상 부분의 유무

사)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아) 슬립 튜브식 액면계의 패키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자)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차)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가)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사업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충전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운반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른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합 또는 납땜입용기를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본다.

(2) 충전사업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3) 대리점이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려면 식품접객업소등과 가스사고 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 대상 차량에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자)까지, 1)파)·1)거)·2)가)·2)나)·2)라)부터 타)까지, 2)하)·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를 명확하게 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패, 공정안전 관리 실패, 저장탱크 운영 실패,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패
나)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패,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패,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1)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만을 말한다)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가) 및 나)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 안의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제1호가목1)바)(1)부터 (3)까지에 따른 것

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2)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저장설비 저장능력의 총합이 15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3)마)·바)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 시 산입된 저장능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나) 로딩암, 충전기, 충전호스, 차양 등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3) 충전 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4)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벽, 기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5)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충전사업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 아)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휴게음식점, 자동차 영업소 및 일반사무실로서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위치, 구조 등을 갖춘 것
 - 타)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 파)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 하) 제1호가목10)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 6) 5)바)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7) 5)나)·다)·바)·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 8)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소에 설치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2)가) 및 5)부터 7)까지의 시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9)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비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충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충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충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가)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를 받을 것
 - (1)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2)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 나)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 10)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바)·1)사)·3)마)·3)바)·4)다)·6)아),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 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키도록 운전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충전이 끝나면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시킬 것
- 2) 충전장의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 방향을 표시할 것
- 3)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차)·1)러)·2)자)·2)차)·2)타)·2)파)·2)하)·3)나)·3)다)·5)나)·5)다)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사) 및 아)의 "용기"는 "자동차연료용 용기"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의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과)·1)거)·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제2호나목1)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1)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2)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3)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을 포함한다)

가. 시설기준

-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4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소형용기 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않는다.
- 2) 마운드형 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3)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탱크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 4)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제1호가목3)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제1호가목3)차)와 관련하여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5)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 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 설치실과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6) 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된 사업장 밖의 배관기준을 적용한다.
- 7)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8)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자)까지, 4)다)·6)아)·7)나), 8)나)부터 바)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가목(1)바), 3)마)부터 자)까지, 4)다)·6)아)·7)나), 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할 것
-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 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 접속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 및 운반책임자의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
- 4)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경우 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송할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 5)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및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2)마)·2)아)·2)자)·2)타)·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라) 및 사)의 "용기"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 나)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 1)러), 2)마), 2)사)부터 하)까지, 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제3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의 1)가)부터 다)까지, 1)마)부터 차)까지, 1)파)·1)거)·1)너)·2)가)·2)나), 2)라)부터 하)까지, 3)가)부터 다)까지, 3)마)부터 아)까지, 3)차)·4)·5)와 제3호나목1)·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p>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p> <p>(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p>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1)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하·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2)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3)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5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8. 5.>

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

1.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용기보관실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용기보관실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저장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나)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

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만, 해상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려는 판매업

소의 용기보관실은 해상구조물이나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용기보관실 바닥은 확보한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높이가 가장 낮은 운반차량의 적재함 높이로 할 것. 다만, 용기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삭제 <2015.12.30.>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檢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리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나)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하고, 그 용기보관실 안에 전기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할 것

라) 용기보관실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할 것

5) 부대설비기준

가)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나)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다)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적정수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라)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마)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글자로 도색하여 표시할 것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流動)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4)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각 벌크로리별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3)의 단서에 따라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는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각각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을 설정할 것

6) 표시기준

판매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7) 그 밖의 기준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가)·2)다)·5)가)·5)나)에 대하여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2)다)·5)가)·5)나)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대표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동일 부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사무실 면적은 5)가)·7)가)의 면적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5)다)·7)나)의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면적을 말한다)을 확보하면 5)가)·7)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8) 제1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의 시설기준

- 가) 사무실은 용기보관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 나)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2㎡ 이상으로 할 것
- 다)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호벽의 기초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가)부터 다)까지에서 정한 기준 외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2)바)·3)·4)·5)라)·6)에 따른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 가)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 나)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 시에는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할 것
- 다)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취급을 하거나 인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 라) 용기보관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 마) 용기보관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 바)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않을 것. 다만, 내용적 30L 미만의 용기는 2단으로 쌓을 수 있다.
- 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 중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할 것
- 아) 벌크로리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해당 판매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2) 이입 및 충전 기준

- 벌크로리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저장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하려면 그 벌크로리와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것
- 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 나)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할 것
- 다) 벌크로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송출하거나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라)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마)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감시하여 과충전 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바)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 사)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셰이프티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 아) 벌크로리로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벌크로리의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할 것. 다만, 저장탱크 설치 장소까지 벌크로리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탱크주밸브를 통하여 충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벌크로리의 충전호스 커플링을 통하여 충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전호스 커플링 연결부 등을 감시하는 사람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점검기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려면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별표 15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을 것.

다. 검사기준

-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 사 항 목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2) 및 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가. 시설기준

- 1)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2) 영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
-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호가목1)가)·2)다)·5)가)에 대하여 시·군 또는 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1호가목1)가)·2)다)·5)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 4) 그 밖에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2)라) 후단·5)나)·5)마)·7)·8)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5)다) 중 "판매업소"는 "영업소"로 보고, 6) 중 "판매시설"은 "영업소시설"로 본다.

나. 기술기준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아) 및 2)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안전성확인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2)·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 제거장치와 방폭 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 경상남도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목록

법령명	조문	법령 위임 주요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제6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개정이유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한 사업 외에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또는 농촌협약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인 위원회를 추가하는 등 거창군 농촌지역개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안 제명, 제2조제3호)
 -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2)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신설
- 나. 마을만들기 관련 비상설위원회 추가(안 제10조)
 - 1) 현행)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 2) 신설)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 다. 비상설위원회에 따라 위원회 정비(안 제11조·제14조)
 - 1) 위원회 임기 삭제
 - 2) 정기회·임시회 구분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3. ~ 10.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농촌협약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 정비하는 내용으로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개정이유

공공목적의 소방용수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면제하여 소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수도 사용료 면제 대상 추가(안 별표 7)
 - 1) 공공목적의 소방용수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제1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9. 27. ~ 10. 14.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목적의 소방용수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 「수도법」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관련근거가 있고 공공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련법령

□ 「수도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8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수도법 개정내용(1992.12.15.)

제25조(소화전)

- ① 수도사업자는 당해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수도사업자는 공공의 소방용으로 사용된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45조(소화전)

- ① 수도사업자는 당해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의견제시 18-0030

~생략~

먼저, 「수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항에 열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익시설에 대하여만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도록 한정하려고 규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히 그러한 자에 대하여 수도물의 요금 할인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동 항의 규정은 좋은식단체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물의 요금할인의 근거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좋은식단체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례를 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생략~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6.10 개정2013.8.14. 2016.2.17.)

[별표 7] 상수도요금 감면율(제37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라.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마.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00퍼센트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70퍼센트	
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50퍼센트	
자. 위생등급지정 우수업소	30퍼센트	
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 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 사 업 비: 3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2년	250	300	300			300	

- 사업내용: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4. 참고사항

가. 부서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려 조속히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1년 대비 5천만원을 증액 출연
- 신용보증재단 출연요청액은 5억원이나 추후 거창군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변화, 경남 타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출연액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나. 관련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다. 참고사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공문(붙임)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려 조속히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1년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이 가능하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금을 증액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 관련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자료**



2022년도 『거창군』 출연금 지원 요청



2022년 거창군 출연금 (5억원) 지원 요청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거창군의 출연금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 및 재단 손실누적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거창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일금 5억원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I 출연의 필요성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비중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비중
경남	264,301	258,222	97.7	1,125,164	806,374	71.7
거창	4,434	4,371	98.6	14,283	12,454	87.2

* 출처 : 「2021 중소기업기본통계(2019년도 사업체 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 신용보증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신규보증 1억원 당	1.88억원	0.83억원	1.01명

* 출처 : 「2020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재단의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

-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보증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운용배수 급증

* 운용배수 증가 : ('18년) 6.66배 → ('19년) 7.41배 → ('20년) 9.9배 → ('21년 결산추정) 8.9배

- 전국재단 최저 운용배수 대비 경남재단의 운용배수는 약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당분간 적정 운용배수(12배) 이내 운용 필요

* 경남재단 **9.90배**, 전국평균 **9.16배**, 전국최저 **5.12배**('20년말 기준)

○ 재단 손실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확보 필요

-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향후 지속적 손실 증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재산 확충의 필요성

* 손실금 증가 : ('18년) △127.5억원 → ('19년) △185.9억원 → ('20년) △162.5억원 → ('21년 추정) △266억원

○ 대규모 보증공급 이후 부실 급증 사례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하여 「'08~'09년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이 후 '12년까지 3년간」 대위변제율 지속적 증가한 사례

* 대위변제율(전국재단) : ('09년) 2.08% → ('10년) 2.83% → ('11년) 4.0% → ('12년) 4.49%

→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시행으로 향후 2~3년간 우리재단 대위변제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II 거창군 신용보증·대위변제 주요현황

○ 거창군 보증공급 현황 (기한연장 포함)

- 재단 설립('96.6) 이후 거창군 소재 기업에 지원된 누적 총보증 금액은 2,044억원
- '21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년대비('18~'19년) 보증지원 증가

* 총 보증공급액 : ('18년) 212억원 → ('19년) 285억원 → ('21년 6월) 268억원

(‘21.6.30.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2017년	3,946	825	2	2	3,948	827
2018년	1,068	212	-	-	1,068	212
2019년	1,239	285	-	-	1,239	285
2020년	1,600	450	5	2	1,605	452
2021년 6월말	998	267	2	1	1,000	268
합 계	8,851	2,039	9	5	8,860	2,044

○ 거창군 대위변제발생 현황

- 재단 설립('96.6) 이후 거창군 소재 기업의 누적 대위변제 금액은 47억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증요건 완화 및 지역경기 침체로 향후 지속적인 부실 증가 우려

(‘21.6.30.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2017년	233	23	1	1	234	24
2018년	43	6	-	-	43	6
2019년	38	6	-	-	38	6
2020년	39	6	-	-	39	6
2021년 6월말	19	5	-	-	19	5
합 계	372	46	1	1	373	47

III 출연금 현황

○ 기초지자체 출연금 비중 저조

- 우리재단 출연금에 대한 비중을 볼 때 신용보증으로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영위하는 시·군의 출연금 비중은 9.7%로 저조한 실정

(기간 : '96.6 ~ '21.6.30, 단위 : 억원)

구분	총 출연금					이월 손익금	계
	정부	경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 등		
금액	557.9	852.9	318.0	1,415.8	119.7	△531.3	3,264.3
구성비	17.1%	26.1%	9.7%	43.4%	3.7%	-	100%

○ 전국 광역지자체 출연금 중 시·군 출연금 비중 하위수준

- 유사한 수준의 타 재단 비교에서도 우리재단의 시군 출연금 비중은 평균(20.8%) 이하의 매우 저조한 수준(7.4%)을 보이고 있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주체별 출연금비중】

(기간 : '96.6 ~ '20.12.31, 단위 : 억원)

구분	총출연금	광역		시·군		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경남	2,872	803	28.0%	214	7.4%	1,855	64.6%

【전국 광역지자체재단 출연금주체별 출연금비중】

(기간 : 설립일 ~ '20.12.31, 단위 : 억원)

구분	총출연금	광역		시·군		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강원	2,004	782	39.0%	74	3.7%	1,148	57.3%
경기	14,340	3,528	24.6%	3,977	27.7%	6,835	47.7%
경북	2,755	586	21.3%	721	26.2%	1,448	52.5%
전남	2,162	675	31.2%	144	6.7%	1,343	62.1%
전북	2,225	660	29.7%	272	12.2%	1,293	58.1%
충남	2,634	614	23.3%	360	13.7%	1,660	63.0%
충북	1,730	329	19.0%	239	13.8%	1,162	67.2%
합계	27,850	7,174	25.8%	5,787	20.8%	14,889	49.3%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영

- '22년 출금은 설립이후 보증공급,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의 합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필요금액을 산정한 것이며, '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출연금의 12배 이내에서 운영가능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영금액 : 5억원 * 12배 = 60억 이내

붙임 1

2022년 거창군 출연금 산출 근거

○ 출연금액 산출

- 지역별 2019년 보증잔액 증가액의 최소출연배수(15배수) 금액과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 합계액에서 도 출연 금액을 지역별로 안분 차감하여 각 기초단체별 출연금 산정

○ 거창군 출연산정 참조자료

(단위 : 백만원)

지역	보증잔액 증가액			대위변제 순증	출연 필요금액			안분차감		2022년 최종 출연금 산출	2021.6.30. 기준 참고 자료		
	2019년 (A)	2020년 잔액 (B)	증감 (C)(B-A)		2020년 (D)	잔액증가 법정비율 (C/15배)	대위변제 (재보증제외) (Dx50%)	소계	경남도 출연		산출 출연금	출연금 (E)	시군별 누적 출연금
합 계	1,484,375	2,316,403	832,028	32,279	55,460	16,135	71,603	5,000	66,603	16,850	31,800	2,316,299	279,496
거창군	32,834	49,456	16,622	414	1,108	207	1,315	92	1,223	500	1,100	48,343	3,413

※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보증잔액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년(2019년 자료에 따른 요청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 요청

- 1) 시·군별 실제출연금 산출은 '20년 기준으로 '19년 대비 증가한 보증잔액에 신용보증재단법상의 법정비율(15배)과 대위변제 발생액의 재보증(50%)을 고려한 금액에 경상남도 출연금(50억원)의 지역별 안분 차감한 값으로 산출함.
- 2) 경상남도 총 출연금은 90억원이나 40억원은 지정(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재원) 출연금으로, 시·군별 안분 차감은 지정 출연금 제외한 50억원을 적용함.
- 3) '22년 출연금은 지역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발생에 따른 필요금액을 산출한 것이며, '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출연금의 12배 범위 내에서 운영가능

【 출연기관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 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 9.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1명		109명		2명	
임원 (‘21.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前 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			2020.11.1.~2022.10.31
	비상임 이사	이**	現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9.1.~
		김**	現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			2020.12.31.~
		김**	現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상무)			2021.6.1.~2023.5.31
		정**	現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2021.6.1.~2023.5.31
		김**	現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임이사			2021.6.1.~2023.5.31
		양**	現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2021.6.1.~2023.5.31
		김**	現 경남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2021.3.3.~2023.3.2
	감사	장**	現 장** 회계사무소대표			2020.9.1.~2022.8.31
고문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단위:백만원)		234,096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01,687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예산액	71,137	88,155	108,057		부채
	지자체 지원액	6,700	17,550	15,000		자본
					299,743 (자산 총액)	
					65,647 (부채 총액)	
					234,09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 원) ‘20.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7,466			43,711		△16,245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출연기관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수행을 목적으로 함
-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진행하며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생산 공장으로서
- 대상지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무상사용하여 왔으며 2022년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건물)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2번지
- 건물면적 : 392㎡
- 소 유 자 : 거창군
- 사 업 비 : 451백만원(기계설비 309, 건축물 138, 부대시설 등 4)
- 사용·수익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 토 지 : 개인 토지(5,500천원/년, 소유주 : 진산 김치성)

나. 사용료 감면 내역: 5,782,622원

- 사용료 산출 : 115,652,447원 × 50/1,000(요율) = 5,782,622원
 - 건 물 : 115,640,000원(시가표준액)
 - 기계설비 : 12,447원

(최초 거래가격 309,000,000원 × 13년 경과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적용)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다. 추진경과

○ 2008. 1. ~ 2021. 12. 31. 무상사용

○ 2021. 10. : 재산관리관(미래전략과) 협의

라. 향후계획

○ 2021. 12.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사용허가 신청

○ 2021. 12. : 사용허가(재산보존 책임, 원상태로 반환 등)

○ 2022. 1. 1. ~ 2024. 12. 31. : 3년간 무상사용

마. 기대효과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연구에 필요한 친환경기능석재공장을 무상사용하여 거창화강석만의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제품의 연구·개발에 매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31조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제15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나.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5.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출연기관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진행하여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장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 거창화강석만의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3. 제1호(토지) 및 제2호(주택)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5.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진설명 : 위천면 남산리 105-22번지



사진설명 : 위천면 남산리 105-22번지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10.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2. 제안이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2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2년	180	280	280			280

- 2021년 출연금 180백만원(2021년 대비 100백만원 증액)
-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건비 지원 등 : 200백만원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석재압축강도 시험기 구입 : 80백만원

나. 예산증액사유

-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연구업무 직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원
- 2008년 최초 구매 이후 내구연한(10년) 경과 및 사용빈도 증가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구입하여 지원 필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거창화강석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관계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자료

【 거창군 화강석연구센터 현황 】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인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4명 (이사 10, 감사 2, 간사 1, 고문 1)
- 직원현황 : 총 6명(센터장 1, 연구직 3, 생산직 2)

II 거창화강석 산업현황

□ 석재산업 현황

○ 채석 및 가공업체 현황

- ▶ 종사인구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물류, 유류, 기계, 공구 등 지역경제에 재투자 비율이 높음)

(단위 : 개소 / 명 / 백만원)

구분	계	석산협회	석재조합
업체수	34	12 (원석 11, 골재 1)	22 (회원 18, 비회원 4)
종사자수	203	101	102
매출액 (2020년)	56,845	30,682	26,163
농가조수익 (2020)	쌀(51,031), 사과(97,773), 딸기(39,333), 한우(123,379)		

※ 비회원사(수가공), 유통업, 중간소매, 석시공 등은 매출액 제외

○ 석재 관급시장 연간 매출 규모(조달청)

- ▶ 관급시장규모 대비 거창지역 매출규모는 동일 수준을 유지 중임
(원석, 인건비, 유류비,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로 내부 수익성은 악화)

(단위 : 백만원)

관급시장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314,004	338,487	384,960	374,732	371,758	380,103
거 창	38,870	40,652	38,200	44,364	38,971	38,390
거창매출규모	12%	12%	10%	12%	10%	10%

※ 관급계약 매출액 기준으로 사급 및 기타 석제품은 제외

Ⅲ 연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

□ 2021년도 성과목표 및 현 실적

구 분		'21년도 성과 목표	'21년도 실적 (9월말)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20건	16건
	기업샘플/시제품 제작	20건	55건
	원산지 검증 지원	5건	1건
	석재 시험분석 지원	500건	530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4건	3건
	석재 대외업무 지원	20건	8건
	홍보 마케팅 지원	10건	2건
학술연구용역	한라산 모니터링 외	5건	6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2건	4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200,000천원	183,826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70,400천원	35,200천원
	학술연구용역	129,600천원	83,466천원
	기타 수익금	-	5,771천원
	합 계	400,000천원	308,263천원

□ 주요업무 추진실적

○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 ▶ 라돈, 석면 등 유해성 분석을 통한 거창화강석 품질우수성 확보
- ▶ 석재가공부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성 분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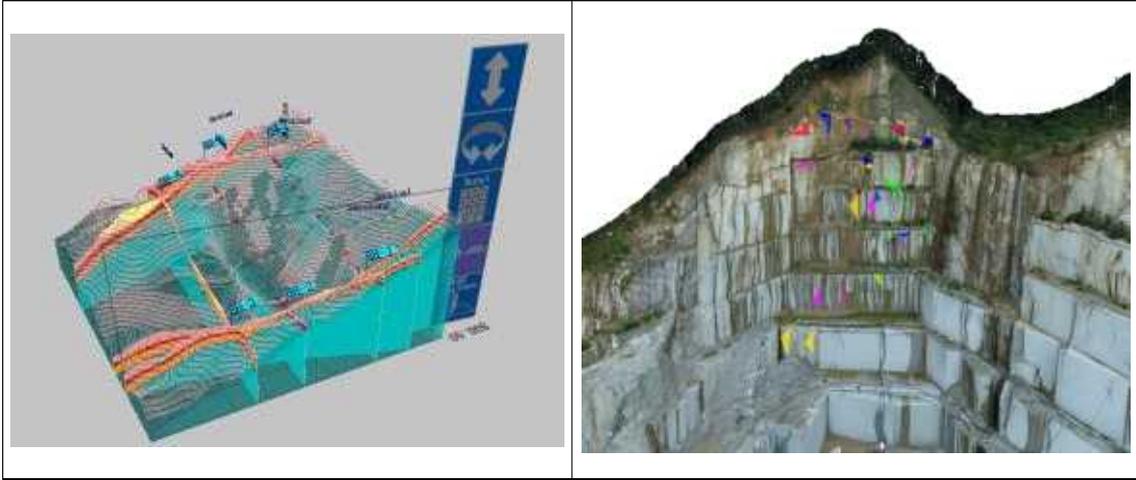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관련업무 추진

- ▶ 석재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업무 지원 및 참여
- ▶ 거창화강석 산업을 대상으로 한 “석재산업진흥지구 기초연구”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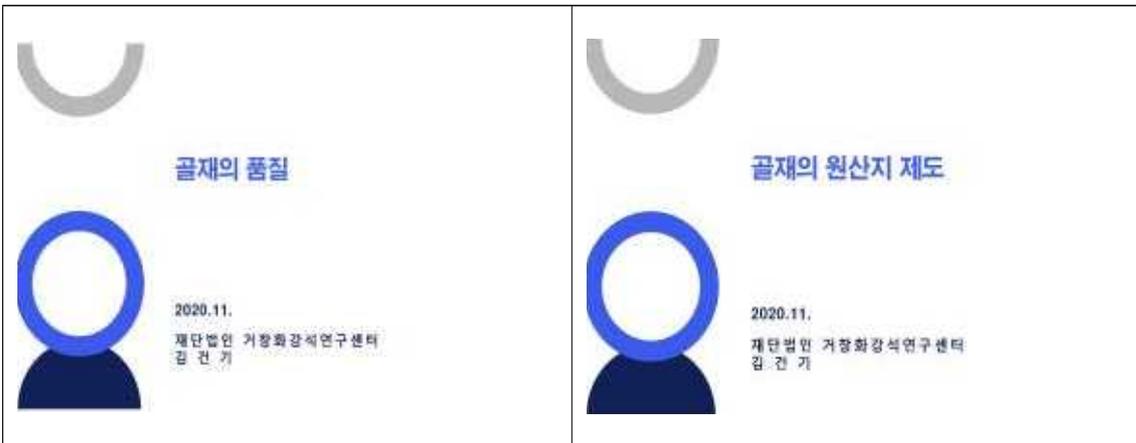
○ 거창지역 원석확보를 위한 석산인허가 업무지원

- ▶ 석산 인허가 관련 현황 분석 및 개발방향 업무협의
- ▶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평가 분석 지원 등



○ 공공·민간부문 학술연구용역 수행

- ▶ ‘석재 및 골재자원 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 ▶ 국토교통부 골재자원조사/골재 불소 발생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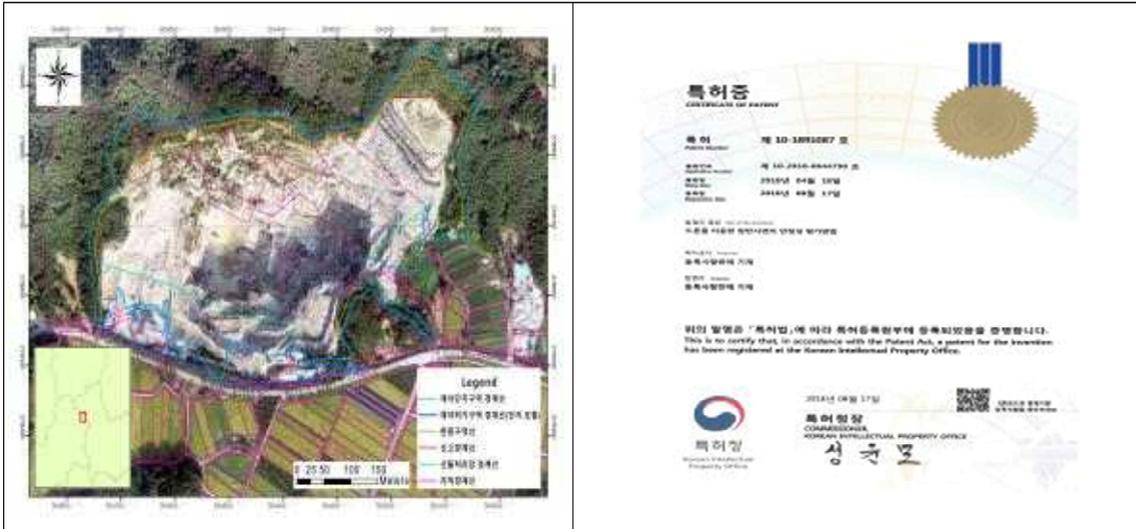


○ 석재품질평가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

- ▶ 거창화강석 품질기준 마련 → 석재 원산지 검증 기술개발
- ▶ 관세청, 조달청,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원산지 검증 활동

○ 채석 경제성 및 사면 안정성 평가 시스템 구축

-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채석 경제성 및 사면 안정성 평가 지원
- ▶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특허 1건 등록)



○ 석재가공 방법 및 표면처리 기술개발

- ▶ 폐자재를 이용한 사고석 제조 및 가공방법
- ▶ 자동 톱다듬을 이용한 빗살무늬 판석 제조 및 가공방법

○ 지역 관광자원 및 기업 매출증대 기여

- ▶ 거창화강석 활용 조형 및 시설물 제품디자인 4종 개발
- ▶ 창포원 설치를 통한 대외 관심도 증대 및 지역 관광자원 확보
- ▶ 거창화강석 활용에 따른 관내 기업 약 95백만원 수익창출



□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과

○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화

- ▶ 추진대상 : 거창군, 거창석산협회, 거창석재조합(주), 연구센터
- ▶ 원자재 및 가공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 528백만원(2020년도)
- ▶ 토석채취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수가공 → 자동화 설비지원



○ 2021년도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국비확보

- ▶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확보 및 관련기업 업무지원
- ▶ 석재 채취업 10개 업체 총 385백만원 국비 확보
- ▶ 석재 가공업 7개 업체 128백만원 국비 확보

○ 공인시험분석 서비스 및 석재 원산지 검증활동 지원

- ▶ 거창 관내 32개 업체 시험수수료 50% 할인 및 우선지원
- ▶ 석재시험분석(398건), 골재시험분석(207건) 지원
- ▶ 국내 유일의 석재 원산지 검증기관 → 거창화강석 사용 유도
- ▶ 원산지 검증에 따른 효과 : 거창화강석 보호 및 업체 매출 증대
- ▶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관내업체 계약이 약 77% 정도 체결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7	2018	2019	2020
울산전체 관급물량	1,819	2,963	3,223	2,958	2,482
울산지역 "ㄷ"석재	1,114	8	6	-	-
거창지역 관내업체	520	2,470	2,221	1,813	1,918
타 지역 석재업체	202	485	1,005	1,145	564
합 계	1,836	2,067	2,963	3,223	2,958

○ 거창화강석 기술개발 및 상용화 실적(2020년 12,574백만원 매출)

- ▶ 가공조경석 형상평가 기술개발 및 규격화 : 12,227백만원
- ▶ 폐자재를 활용한 굴림보도판석 개발 : 202백만원
- ▶ 성곽석 제조 및 가공기술 개발 : 50백만원
- ▶ 조형물, 열주, 벤치, 앉음벽 등 제품 개발 : 95백만원
-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광택 판재 품질기준 마련
- ▶ 가공용 톱을 이용한 빗살무늬 판석 제조방법 및 제품 개발

○ 기업지원을 통한 제품화 실적

- ▶ 지원업체명 : 스톤 아이 앤 에스
- ▶ 지원내용 : 교통안전경계석 제품 디자인 및 개발, 품질분석 및 컨설팅, 중소기업부 벤처나라 등록(2020. 12. 14) 지원 등
- ▶ 매출실적 : 포항시 외 7개소 총 32,450천원(2021. 9월말 기준)

거창 한들교 회전교차로 설치전경	
주간	
야간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 지원**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유해성 분석지원

- ▶ 석재 가공시 발생하는 석분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
- ▶ 석분슬러지 관련 각종 시험, 분석업무 등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해결
-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 관내 업체 유해성 분석지원

구 분	대 상	구 분	대 상
토양오염공정시험	17개 업체 지원	토양용출시험	5개 업체 지원

□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

연구개발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기업체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센터 수익사업 기업체공동기술개발
석제품질 평가	석재원산지 검증/판별방법	석재원산지검증 조달청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수수료
	국제공인시험 기관인정	거창업체(50%할인) 시험분석지원	거창지역/전국 시험분석 수수료
	단체표준 시험기관지정	전국석재관련업체 시험분석 지원	가공조경석형상평가 기술개발용역수행 (특허1건등록/2건출원)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술개발	급경사지안정성 평가분석	사면안정성평가/보강 (3개업체 지원)	거창 및 타 지역 사면안정성평가
	사면안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석산인허가관련지원 석산 환경재해평가 및 사면분석 지원	드론을 이용한 사면 평가/지형변화 특허2건출원 준비중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폐기물유해성평가 업무지원(24개업체)	재활용관련기술 (세라믹기술연구원)
	석분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기물 투수/다짐 시험분석지원 폐기물관련법 개정(석산복구사용)	석분활용방안 (도시건축과 연계, 특허 1건 출원)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디자인/실용화 제품	석재활용제품개발 (기업체 공동개발)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1건출원 준비중)
	CNC 장비활용 개발	CNC 장비 활용 가공제품제작지원	컬링스톤 상용화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발	컬러석재 제조방법	컬러석재 시제품 샘플제작/납품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 3건 출원)
	석재표면 처리방법	석재표면처리기술 (기업체공동개발)	한영대리석 사고석 모동석재 표면처리 (혼드, 브리쉬 등)

IV 연구센터 향후 운영계획

□ 석재산업 추진방향

- 석재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거창 화강석 산업 중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산림청)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기반조성-산업지원 및 육성의 단계별 추진

□ 주요 추진사업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방향 검토

- 사업목적 : 거창화강석 산업지원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자료 확보
- 사업내용 : 산업대분류상 거창화강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 기여효과 정량적 분석 및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방향 검토

○ 거창화강석 정밀 매장량 평가 지원

- 사업목적 : 양질의 석재확보 및 원석공급 부족해결 지원
- 사업내용 : 시추조사 및 과학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용가능 원석 확보를 위한 정밀 매장량 평가 지원
 - ※ 매장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거창화강석 산업진흥지구 지정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조달전문검사기관 지정 추진

- 사업목적 : 조달전문검사제도 시행에 따른 품질검사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조달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관급시장 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대 기회 지원

○ 거창화강석 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

- 사업목적 : 거창화강석 산업진흥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 확보
- 사업내용 : 채석지구(골재 포함) 2개소, 가공 및 연구지구 1개소 지정 신청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차지하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원활한 원석공급으로 거창화강석 산업 활동의 연속성 보장
- 채석부터 가공까지 거창화강석 산업의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완성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석재산업을 선도하는 거창군 위상 및 거창화강석 산업 중흥 기대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명		6명	0명			
임원 ('21.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최○○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조○○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감사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9. 3. 21. ~ '22. 3. 20.			
		강○○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고문	변○○	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	'19. 3. 21. ~ '22. 3. 20.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450 (자산 총액)
	예산액 ²⁾	733	806	887		부채	11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180	180	180		자본 ¹⁾	43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83			244		122	